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9. 3-----사하구청장

나.회 부 일 자 : 2004. 9. 3

다.상 정 일 자 : 제12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9.21)상정.채택

2. 제안설명요지(장일룡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일부 구간경계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향후 주민 거주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산지 등 능선을 이용 획정된 현재의 경계선을 도로여건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동일아파트 신축부지를 포함한 사하구 감천1동 일부 12필지 12,817m'를 서구 암남동으로 편입 조치 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구간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 하는 행정구역경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한 것으로 부산시에서는 동래구 등 10개 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 본 건은 2003. 9. 22 해당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동일에서 부산광역시에 행정관할 구역 조정건의에 의거 서구 관계공무원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합의된 것으로
- 행정구역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주요도로, 하천, 주요 지형지물 등 지리적인 위치와 주민의 생활권, 행정권 등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생활권과 행정권, 지리적 여건이 서구 쪽에 가깝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04. 7월 한달 동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감천1동 각종단체 토지소유자 등) 일부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다수(69.6%)가 서구와 합의된 경계구역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반대자들은 서구로 소속될 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세수 감소를 염려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구세 수입에 대한 확실한 보전보장을 받은 후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 채택(의견서 별첨)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견에대한-

의견서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일부 구간경계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거주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서구 관할로 일부편입 되는 지역은 생활권, 행정권,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전에 인근 지역민의 완전한 민원해소와 구세 수입에 대한 확실한 보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청장이 제출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2004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